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7월 19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무역투자실 총괄기획과 안병화 과장(044-203-4120), 김성철 사무관(4123)
산업부 무역투자실 홍보협력과 최영수 과장(044-203-4130), 이수호 사무관(4132)
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 과장(042-481-3201), 정재호 사무관(3211)

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

- 수출기업 뿐 만 아니라,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강화하고, 지역순회 FTA 종합설명회 실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'14.7.18(금) 오후 4시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「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」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

*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, 관세청·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6명 및 무역협회, KOTRA,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

□ 금번 회의에서는 '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', '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' 등을 논의

○ 관세청은 「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」을 보고

-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(관세청)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는 한편, 무료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-PASS와 연계하여 전자신청·심사 체계 구축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하였음

* ('13.11월) 서울세관 시범 운영 →('14. 2월) 6개 본부·직할세관(서울·부산·인천·대구·광주·평택세관) 중심으로 전국 확대 실시

- 아울러, 원산지관리 및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*) 보급 확대하는 한편 엑셀 연계, 서버내 자료보관(웹용) 등 편의기능을 강화키로 하였음

* 중소(영세)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무료 개발·보급(관세청)
- '14.6.30 기준 총 11,137개 기업이 사용(PC용 4,946개 웹용 6,191개)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「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」을 보고

- 하반기에 경제파급 효과가 큰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, 중앙-지방간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음

- 산업부·지방상의 등 FTA 지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, 관계부처(청)이 참여, 지자체 공무원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임

개최 시기	지 역
8월	① 대전·충남·세종, ② 충북, ③ 전북
9월	① 전남·광주, ② 부산, ③ 울산, ④ 경남, ⑤ 제주
10월	① 대구·경북, ② 서울, ③ 인천, ④ 경기, ⑤ 강원

□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"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이 중요하다" 면서 "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"고 밝혔음

<첨부1>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활성화 방안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병화 총괄기획과장(☎ 044-203-41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첨부1>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활성화 방안

원산지확인서
세관장 사전확인제 활성화 방안

2014.7.18

관 세 청

차 례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세관장 사전확인제 운영 현황 ····· 2

Ⅲ. 세관장 사전확인제 활성화 방안 ····· 3

Ⅳ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5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Ⅰ. 추진 배경

□ **FTA 확대**에 따라 원산지증빙의 주요 요소의 하나인 **원산지 확인서의 중요성** 증대

○ 협력사가 제공한 원산지확인서로 최종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**원산지증명서를 작성**하므로 **신뢰성 있는 확인서** 제공 필요

<원산지확인서>

◇ (FTA시행규칙 제6조의3) "원산지확인서"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작성·제공하는 서류를 말함

○ 특히, **미국, 유럽연합** 등에서의 **원산지검증 요구**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**공급망간 일괄적인 원산지관리** 필요

* 검증요청건수: ('11) 122 → ('12) 515 → ('13) 2,512 → ('14.4) 1,463

□ 중소협력업체는 **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**이며, 수출자는 **발급된 확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**하는 경우가 많음

○ **(협력사)** FTA의 **직접혜택**이 거의 없는 반면 확인서 발급에 따른 **원가정보 유출** 및 **사후 검증부담** 등으로 발급을 기피

○ **(수출자)** 협력사가 발행한 확인서의 **신뢰성 의문**으로 원가정보 등 추가적인 증빙 요구 및 검토로 **업무 비효율**

□ 원산지관리에 미흡한 **협력업체**와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**수출기업**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**제도적 기반** 마련

○ 중소(영세)기업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**세관장이 협정 및 법령상 적정성을 심사·확인 서비스 제공**

Ⅱ. 세관장 사전확인제 운영 현황

□ **추진경위**

○ '13.11월 **서울세관 시범 운영** 실시

○ '14. 2월 6개 본부·직할세관 중심으로 **전국 확대 실시**

* 서울·부산·인천·대구·광주·평택세관

□ **처리절차**

<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제도 업무처리 절차>

협력업체 신청	→	세관 심사	→	FTA 포털 등록	→	협력업체 유통
원산지확인서 심사 신청 (서류제출)		원산지확인서 심사 및 결정 (수작업 심사)		심사완료내역 개별 등재 (확인번호 부여)		원산지확인서 비전자적 유통 (서류전달)

① 협력업체가 발급한 **원산지확인서**와 **심사자료(BOM 등)**를 첨부하여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

② 세관은 제출자료로 확인서의 적정성 심사 및 확인

③ 심사결과 등록 및 **관세청 FTA 포털**에 게재

* 세관장 **사전확인 확인번호(Certification No.)** 부여

④ 심사결과서 업체 통보 및 기업간 원산지확인서 유통

□ **처리현황 및 시사점**

○ **(현 황)** '14.7월 현재 **총 58개 업체, 383건** 사전확인 및 심사 중

○ **(시사점)** 세관장확인제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2~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**활용실적을 제고**할 필요

1) 원산지확인서 주 이용자인 **2~3차 협력업체**에 대한 홍보 강화
2) 협력업체의 **원산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**
3) 신속한 원재료 자료제출 절차 및 세관 심사절차 필요
4) CEO 인식 제고 및 **담당자의 업무부담** 제거 필요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Ⅲ. 세관장 사전확인제 활성화 방안

◇ 원산지확인서 **세관장 사전확인제**를 적극 확대하여 수출공급망의 원산지관리 **신뢰성을 제고**하고, **원산지검증에 선제적**으로 대응

1 FTA-PASS와 연계하여 사전확인제 전자신청·심사 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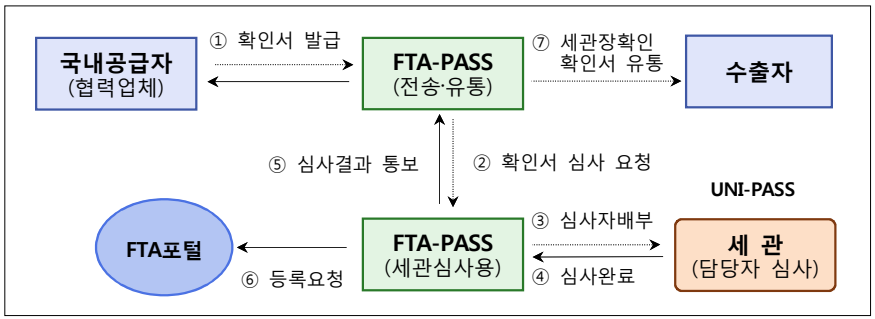
○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를 **종이서류로 제출**하던 것을 FTA-PASS내 구축된 **전산자료로 신청**할 수 있도록 **UNI-PASS와 FTA-PASS 연계**

- **(협력업체)** 확인서 발급에 사용한 FTA-PASS 데이터를 일괄로 제출할 수 있어 **서류제출 등 부담이 대폭 완화**

- **(세관)** 제출된 신청서를 **수작업으로 심사**하던 것을 FTA-PASS를 이용하여 심사함으로써 **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대폭 축소**

○ 또한, FTA-PASS내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**세관장 확인이 완료된 원산지확인서가 기업간 유통**되도록 시스템화

【 FTA-PASS 활용 세관장확인제도 절차도 】



2 중소(영세)기업의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

○ **원산지관리 및 확인서 발급**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(영세)기업들을 위해 **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*) 보급 확대**

* 관세청에서는 중소(영세)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**무료 개발·보급**
- '14. 6.30 기준 총 **11,137개** 기업이 사용(PC용 4,946개 웹용 6,191개)

○ 중견기업뿐아니라 중소(영세)기업도 사용하도록 **간편하고 정확한 시스템 구현 및 지속적인 기능개선**

- 협정별/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자동확인, 자동판정 기능 및 **기업별/품목별 원산지확인서 일괄 발급** 기능 탑재
- 중견 및 중소기업을 위한 **ERP 연계 모듈** 개발 보급('13.12월)
- 영세기업을 위한 **엑셀자동연계* 모듈** 개발 보급('14.6월)
- 업무대행 **관세사 일괄 관리기능** 추가('14.9월)

* 영세기업들도 자체 원산지관리에 사용 중인 Excel 데이터를 그대로 FTA-PASS에 연계하여 원산지관리 및 판정 가능

○ 잦은 인력이동에 따른 원산지관리 단절을 예방토록 원산지관련 **기초자료를 FTA-PASS 서버에서 보관·관리**

- 중소기업 담당자가 변동되더라도 회사 고유 ID로 **원산지자료 일괄관리 가능(웹용)**
- 향후 **원산지검증** 등에 대비한 **확인서 발급자료 유실 방지***

* 원산지확인에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

3 수출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및 모범사례 발굴

○ 주요 수출기업과 연계하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세관장 사전확인제 **전산신청·심사 시범운영** 추진 ('14년 하반기)

-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유사 기업군으로 확대 운용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4 세관장 사전확인제 법적 안정성 확보

○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중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의 법제화로 **법적 안정성 확보** ('14년 하반기)

* FTA 특례법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에 제출('14.5)

○ 통일적인 시행을 위해 **세관장확인 및 FTA-PASS 활용매뉴얼** 작성 배포

*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협업 추진

5 세관장 사전확인제 홍보 강화

○ FTA 수출입기업 간담회, 기업설명회 등 **CEO 대상 홍보 강화**

* 6개 지역별로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

○ **YES FTA 컨설팅 사업***과 연계하여 사전확인제 집중 홍보

- 관세사 등 **민간 컨설턴트** 대상 사전확인제 홍보
- 컨설팅 기업을 대상 사전확인제 및 FTA-PASS 처리절차 소개

*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관세사 등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 ('14년 예산 12.3억)

○ 수출기업의 **1~3차 협력업체** 대상으로 세관장확인제 전자신청을 위한 **FTA-PASS 보급·활용교육*** 확대

*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활용 '14년 하반기 **총 8 회 활용교육** 및 현장지원

Ⅳ. 향후 추진계획

□ 조속한 시일내에 세관장 사전확인제 전산처리 개편 절차를 완료하고, 시범운영을 거쳐 **본격적인 전산신청·심사 시행(9월)**

□ FTA-Korea 등 여타 원산지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가능성 검토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